
독서당고전교육원 학칙

(제2호 2019년 9월 1일 일부 수정; 2013년 7월 3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독서당고전교육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은 한국고전의 전통문화 및 정신을 선양하고 한국학의 발전적 계승을 위하여 차세대의 한문 교육 및 한국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원은 '독서당고전교육원'이라 칭한다.

제3조【조직】

- 1.본원은 원장과 전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둔다.
- 2.본원의 원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학자를 모시며, 원장은 전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위촉한다.
- 3.전임교수 및 초빙교수는 원장의 위촉을 받아 교육을 담당한다.

제4조【편제】본원은 정규교육과정인 장학연수과정과 국역전문과정 및 한문고전지도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 및 교육을 위해 일반교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편성】각 반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장학연수과정: 10명 내외
2. 국역전문과정: 5명 내외
3. 한문고전지도사과정: 20명 내외
4. 일반교양과정: 과목별 20 명 내외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1.수업연한은 장학연수과정은 3년, 국역전문과정 및 한문고전지도사과정은 2년, 일반교양과정은 제한이 없다. 재학연한은 장학연수과정은 7년, 국역전문과정 및 한문고전지도사과정은 5년, 일반교양과정은 제한이 없다. 장학연수과정 연수생이 7년, 국역전문과정 및 한문고전지도사과정의 연수생이 5년의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재학연한이 경과하였으나 본원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학년 수업 방학

제7조【학년】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1년 2학기로 한다.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이다.

제8조【수업】수업은 소정의 운영 시간표의 내용에 따른다.

제9조【방학】정기 방학은 다음과 같이 둔다.

- 1.하계 방학: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 2.동계 방학: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제10조【방학기간 변경】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제9조에 규정한 방학 기간을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일반교양과정은 위 제7조-9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4장 입학 휴학 복학

제11조【입학자격】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전 및 경전을 수학할 능력을 구비한 자는 전임교수의 추천 및 원장의 판단에 의해 입학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절차】본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학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 1.지원서
- 2.소정의 입학금
- 3.기타 필요한 사항(추천서, 사진 등)

제13조【입학전형】제12조의 입학 희망자는 소정의 절차(한문 시험 및 면접 등)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14조【입학허가】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5조【입학허가시기】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1학년 개시 전 입학식 때에 한다.

제16조【휴학】

- 1.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자는 매 학기 초(3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2.휴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3.병역 및 해외 근무 등, 1년 이상 타의에 의해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전항의 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제17조【복학】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8조【일반반】일반교양과정은 위 제11조-1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5장 제적

제19조【제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 1.출석 및 학업 성적이 사정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
- 2.본원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습 분위기를 어지럽힌 자
- 3.휴학 기간 경과 전에 복학하지 않은 자

제6장 교육과정

제20조【교육과정 편성】장학연수과정과 국역전문과정과 한문고전지도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년 별 수업을 편성하고, 일반교양과정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장학연수과정과 국역전문과정과 한문고전지도사과정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1조【수업시간표】수업시간표는 학년 및 학기 초에 원장이 정한다.

제22조【연수】정규과정생의 연수는 교육 기간 중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국내 연수는 매년 1회 방학 때, 국외연수는 2년 또는 3년에 1회씩 교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출석 및 이수시간】

- 1.교과 이수 단위는 출석 및 성적으로 표시하며, 매 학년 1주에 3일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 2.장학연수과정과 국역전문과정과 한문고전지도사과정의 교육과정은 매 학기 16주 이상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수업은 학기별로 진행된다. 부득이 2학기 수강이 어려울 경우 다음해 2학기에 재수강한다.
- 3.장학연수과정과 국역전문과정 등의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본원이 주관하는 연수 및 학술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 성적

제24조【시험】장학연수과정과 국역전문과정과 한문고전지도사과정 재학생의 시험은 담당교수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매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되, 담당교수가 필요로 할 때는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성적】

- 1.학업성적은 각 과목의 시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2.학업성적은 출석률 70% 이상, 과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진급 또는 수료할 수 있다.

제26조【추가시험 및 재시험】

1.장학연수과정과 국역전문과정과 한문고전지도사과정 재학생이 병역, 질병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전항의 절차를 밟은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가 종료된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추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3.과목별 60점 미만을 받은 재학생은 담당교수의 감독 하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 단, 재시험은 2회에 한한다.

제27조【수료 및 자격증】

1.장학연수과정과 국역전문과정과 한문고전지도사과정의 수료는 출석률 70%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적 과목별 60점 이상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 수료 해당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2.한문고전지도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와 아울러 한문고전지도사 자격증(1급 또는 2급)을 수여한다.

3.장학연수과정 및 국역전문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 한문고전지도사 자격증(1급 또는 2급)을 필요로 할 시에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80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다.

4.한문고전지도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한문고전지도사 자격증(3급)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80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교무위원회

제28조【설치】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교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1.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2.전임교수 및 한국고전교육원 각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0조【임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심의】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교육 사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입학과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시험과 평가, 상벌 및 장학에 관한 사항

5.수료증서 및 자격증 수여에 관한 사항

6.기타 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32조【회의】

1.위원장은 교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장 수업료

제33조【수업료】

- 1.장학연수과정 및 국역전문과정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면제한다.
- 2.한문고전지도사과정의 경우 소정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면제한다.
- 3.일반교양과정의 경우 소정의 수업료 및 교재비는 전액 면제한다.

제10장 장학금

제34조【장학금】

- 1.장학연수과정 및 국역전문과정의 모든 연수생에게 기본 수업료를 면제한다.
- 2.장학연수과정 및 국역전문과정의 연수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업료 면제 이외에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3.장학금 지급이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장이 정한다.

부칙

1. 본 학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한국고전교육원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고전교육원의 제 규정을 적용한다.
 3. 본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